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2366
-----------	------

2025년 3월 5일
교육 위원 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2월 3일, 김기덕 의원
2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3. 상정일자 :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(2025년 3월 5일 상정, 수정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기덕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 (2024.12.6. 정부 이송 및 2025. 6.21. 시행 예정)에 따라 현재 교육청 관련 조례상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- 이를 위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사전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

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‘보조인력’)을 배치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조례상 근거 마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 지원 조항 신설 (안 제5조제2항제6호)
- 나.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(안 제10조)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66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시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‘보조인력’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,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¹⁾받았습니다.

1) 보도자료: “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…인솔교사 유죄”(국민일보. 2025.2.11.)

-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²⁾ 및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의 배치근거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³⁾하였습니다.

[표-1]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(초·중·고)⁴⁾

(단위 : 건)

구 분	수련활동	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	1일형 현장체험	비 고(세부내역)
2022	4	4	0	개인부상4, 감염병3, 학폭1
2023	9	3	0	교통사고4, 개인부상4, 감염병3, 범죄피해1
2024	1	2	0	교통사고1, 식중독1, 개인부상1
계	14	9	0	

- 이러한 요구에 지난 2024년 12월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학교안전법」)이 개정⁵⁾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솔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,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·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따르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(제10조의4).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「학교안전법」에서 위임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,

2)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7.3%의 교원이 '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, 고소·고발 등이 걱정된다'고 응답하였고, 55.9%가 '안전사고 등 민원·소송 부담이 크므로 현장학습체험을 폐지해야 한다'고 답하는 등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. [교총보도자료] 유·초등 교원 1만 2154명 대상 현장체험학습 긴급설문조사. 2023.9.8.

3) 보도자료: "'보호장치 없이 인솔 못해'... 양주 주원초 현장학습 싸고 갈등"(경기일보, 2024.5.20.)

4) '시의원 요구자료 제출(224번)'(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-1745, 2025.2.10.)

5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5. 6. 21.] [법률 제20567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 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학교장 및 교직원 등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0조의4(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)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이 조에서 "보조인력"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이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에 일조함과 동시에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‘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’을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같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(군)외 창의적 체험활동⁶⁾의 학교 밖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,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체험유형에 따라 수학여행, 청소년활동 및 기타 체험학습으로 구분·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‘수련활동·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⁷⁾’에 갈음하여 추진하고 있으며(조례 제5조제1항), 이는 정책 수립의 연계성 및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수립되고 있습니다.
- 현재 교육부는 「학교안전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한 ‘현장체험학습 안내자료⁸⁾’를 시·도 교육청에 배포하였고, 이에 따르면 ‘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’의 정의를 ‘안전요원’과 ‘기타보조인력’으로 규정하고,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하되

6)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부 교과과정으로 자율·자치활동 영역, 동아리 활동 영역, 진로 활동 영역으로 구분됨.

7) ‘2025학년도 수련활동·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’ (체육건강예술교육과, 발간번호 서울교육 2025-33)

8) ‘현장체험학습 안내자료’ (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, 2025.1.3. 배포)

각 시·도 교육청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[표-2] 현장체험학습 인솔자(인솔교사, 보조인력) 유형별 설명⁹⁾

구분		설명	
인 솔 자	인솔교사	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,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	
	보 조 인 력	안전요원	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
		내부 안전요원	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원 중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받고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자
		외부 안전요원	안전 관련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기타보조인력	인솔교사 및 안전요원(내·외부)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교육청(또는 학교) 등이 실시하는 기타보조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		

[표-3]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안¹⁰⁾

구분	설명
역할	인솔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,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 수행
배치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생의 연령, 이동거리, 활동유형,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 배치, 숙박형은 숙박업체별 야간근무를 위한 보조인력을 1명 이상 추가 배치 * (예) 초등 저학년의 경우, 버스 1대당 보조인력 1명 배치 · 부득이하게 안전요원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되,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* 마련 * (예) 기타보조인력이 안전요원을 대체할 경우, 안전요원 인원의 1.5~2배 확보
운영방식	여행의 출발지(집결지)부터 도착지(해산지)까지 모든 일정 동행 원칙
채용방법	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,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보조인력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를 요구
채용요건	외부 인력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
근무조건	근무시간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8시간(휴게시간 별도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하여 입찰공고문, 과업지시서, 계약서 등에 명확히 명시

○ 따라서 안 제5조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보조인력’에 대한 배

9) ‘현장체험학습 안내자료’ (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, 2025.1.3. 배포) 중 7쪽 참조

10) 위의 자료 중 8~9쪽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.

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시켜 현장학습체험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또한, 지원계획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사항을 미리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,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지원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는 것은 현장학습체험학습 시행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됩니다.

2)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(안 10조)

- 안 제10조는 보조인력의 배치에 관한 학교장 및 보조인력의 역할과 의무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.
 - 세부적으로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(안 제1항),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고(안 제2항)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도록(안 제3항)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또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,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(안 제4항).
- 먼저 안 제10조제1항은 개정된 「학교안전법」 제10조의4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현장학습체험에 적용함으로써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를 재확인하는 것인바,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음으로 같은 조 안 제2항 및 제3항은 학교장에게 보조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안내와 업무 부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 -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,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(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제1항), 「학교안전법」은 학교장에게 보조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 - 더욱이 보조인력 역시 「학교안전법」상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, 이러한 보조인력이 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
 - 다만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가 존재하고, 보조인력에 관한 「학교안전법」의 개정취지가 현장체험학습시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바,
 - 학교장 및 보조인력에게 안내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이 확보·운영될 수 있도록 안 제 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) 부칙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5년 6월 2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동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「학교안전법」이 부칙으로

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2025년 6월 21일부로 시행될 예정인바, 법률과 조례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.

-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에서 조례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¹¹⁾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본 규정은 법 시행 전 조례안이 먼저 시행되는 등의 입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한편, 부칙 기술 방식은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상 조례 작성례¹²⁾에 맞는 형태로 규정되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2.13.).¹³⁾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

- “안내하여야 한다” 를 “안내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2항).
- “부여하여야 한다” 를 “부여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3항).
- “준수하여야 한다” 를 “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4항).

11) 법제처(2022.8.), 「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, 290쪽.

12) 위의 책, 478쪽. 부록3 조례 작성례: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/ 공포 후 0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/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

13)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2.13.)

Ⅶ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6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5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상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, 「학교안전법」에서 학교장 또는 보조인력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등을 안내하거나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안내하여야 한다” 를 “안내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2항).
- “부여하여야 한다” 를 “부여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3항).
- “준수하여야 한다” 를 “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4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안내하여야 한다”를 “안내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여하여야 한다”를 “부여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준수하여야 한다”를 “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신설></p>	<p>제10조(보조인력 배치)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“보조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<u>안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<u>부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<u>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보조인력 배치)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“보조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이 조례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10조(보조인력 배치) ① <u>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“보조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0조 · 제11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1조 · 제12조</u> (현행 제10조 및 제11</p>

현행	개정안
	조와 같음)